

여비규정

제정 2021.12.28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상북도체육회(이하 “본회” 라 한다) 임직원이 도체육회 업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체육회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비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“여비” 라 함은 철도임, 선임, 항공임, 자동차임 및 체재비(일비, 식비, 숙박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말한다.

제2장 여 비 등

제3조(여비) 본회의 임원 및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.

제4조(여비의 종류와 구분, 계산) ① 여비는 운임·일비·숙박비·식비·이전비·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.

② 사무처 임직원의 여비 구분 및 지급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. 다만, 직무수행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동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.

④ 출장일수는 출장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. 다만, 직무 수행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출장일수에 포함한다.

⑤ 다수인이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출장할 때에는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여비의 정산) 여비의 정산은 출장자가 출장을 완료하고, 출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 경비 등)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본회가 주최·주관하는 평가, 심사, 강의 등 상시 업무가 아닌 사업에 참가하거나 초청된 사람은

“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”를 준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본회 정관 제7장 각종위원회의 결정이나 회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도 제1항에 준하여 경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 (2021.12.2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.01.0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.